

## 5 근무성적평정 등(승진규정 제3장)

### 1. 평정의 기준(승진규정 제16조 및 제28조의2)

평정단위 학년도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·근무수행 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를 평가하되,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교감·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[별지 제2호서식], 교사는 [별지 제3호의2서식]에 의하여 평정 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
- 가.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
  - 나.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
  - 다.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
  - 라.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·평가할 것
2. 교감·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[별지 제3호서식], 교사는 [별지 제4호서식]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하되, 교사의 다면평가표는 [별지 제4호의2서식],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표 합산표는 [별지 제4호의3서식]에 따른다.
3. 근무성적 평정은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평정하되, 남·여 차별적인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4. 평정의 예외(승진규정 제20조 및 제28조의5)

가. 휴직,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 한다.(다만, 휴직, 직위해제 등이 된 자라 하더라도 해당 학년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을 하여야 한다.)

※ “실제로 근무한 기간”이란 휴가(연가, 병가, 공가 및 특별휴가), 휴직(「교육공무원법」제44조 제1항에 따른 휴직), 직위 해제, 교육훈련파견(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제7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7호)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함

※ “2개월”은 민법 제160조의 역(曆)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, 휴직, 직위해제, 교육훈련 파견,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(인사혁신처예규 제5호, 2015.01.23.)

※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“8시간 미만의 휴가(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, 조퇴, 외출,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, 공가의 합산)”는 “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”로 계산하지 않음

나.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(2016학년도는 12개월)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·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 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학년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한다.